

- 감 사 기 간 : '08. 9. 17 ~ 10. 8
- 감 사 개 요 : 감사원 지방공기업 기관운영에 대한 종합감사
- 감사결과통보 : '09. 1. 15

연번	지적사항 요약	조치현황
1	『근로자 휴직보상금 지급』 부적정 부당하게 지급한 휴직보상금 금15,380,090원 회수	<<조치완료>> 부당하게 지급한 휴직보상금 금15,380,090원 회수 완료 ('08. 12. 15)
2	『지방산업단지 선수급 정산업무 처리』 부적정 평택산업단지와 오산가장산업단지의 산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33명의 분양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한 선수금이자 금5,300,636,520원을 추가로 환급하시기 바람.	<<조치완료>> - 평택현곡산업단지 - 감사원 재심의 청구 접수('09. 1. 23) - 감사원 재심의 청구 인용('10. 1. 30) - 오산가장산업단지 - 총31명의 계약자에 대하여 - 금536,604,900원 환급 완료
3	『국외출장 업무태만』 『경기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』 제53조에 따라 “징계”처분 하시기 바람.	<<조치완료>> - 관련자 인사조치('09. 1. 29) - 감봉2개월, 감봉1개월
4	『광고신도시 종합홍보용역 계약 업무처리』부적정 -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(사업수행용역 실적 미달) 타이거코리아(주)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 하시기 바람. - 관련자들에게는 “주의”를 촉구하시기 바람.	<<조치완료>> 타이거코리아(주) 계약해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지 관련자 인사조치(주의2명) ('09. 1.29)
5	『접대비(업무추진비) 예산 편성 및 집행』 부적정 향후 접대비(업무추진비)예산을 「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접대비(업무추진비)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.	<<조치완료>>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-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기준강화 - 향후 매출액 실적추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액 관리 철저
6	『근로자 휴직보상금 지급업무 처리』부적정 - 앞으로 근로자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령과 다르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휴직보상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. - 관련자에게는 “주의”를 촉구하시기 바람.	<<조치완료>> -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사사례를 전직원 공람조치 - 관련자 인사조치(주의1명)('09. 1.29)